

2020. 9. 14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0년 9월 14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I·SEOUL·U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

여성권익담당관	김 현 주	
여성권익기획팀장	최 영 무	
주 무 관	오 부 자	
담 당 자	김 지 원	02-771-7770(401)
홈페이지	www.seoulwithu.kr	

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9쪽

서울시, '소규모 직장 지원'

「서울 직장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」 15일 개관

-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% 30인 미만 사업장, 법적·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 취약
- 3팀 10명 '예방센터' 문 열어... '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예방교육' 무료 지원
- 피해지원기관과 협약 통해 '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·동행지원' 서비스 실시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장 및 시민과 함께하는 공모전·캠페인 추진

15명이 근무하는 A사의 B씨는 상사의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. 그 과정에서 1차 부당해고를 당한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으로 복직했지만 성희롱 행위자와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다시 2차 부당해고를 겪었다. _국가인권위원회 '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9집(2019) 中

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.8%를 차지하지만 법적·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 「서울 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(센터장 박현이)」를 15일(화) 개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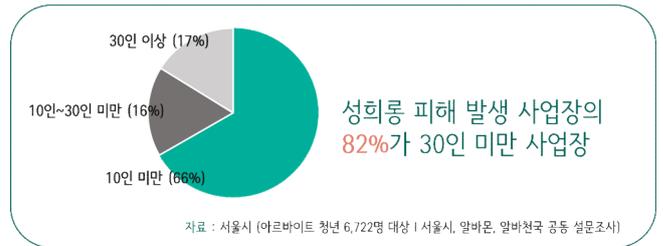
○ 서울시, 알바몬, 알바천국 공동 설문조사(2018)에 따르면, 성희롱

피해 발생 사업장의 82%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,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과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.

◆ 30인 미만 사업장 현황



◆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 규모



【 사업장 규모별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 】

규모	내용	근거
상시 근로자 10명미만 사업장	◦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가능	◦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3조
상시 근로자 30명미만 사업장	◦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(노동법관련) - 근로계약, 임금체불, 성희롱 예방교육 등 점검 -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및 사업주 자율점검	◦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
상시 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	◦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(3년마다 1회)	◦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◦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2조
	◦ 고충처리위원 의무화	◦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

□ 서울시는 2018년 ‘미투(#Metoo)’ 운동과 관련해 ‘성희롱·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’ 계획을 마련하고,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센터 개관을 추진해왔다.

○ **윈드유**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, 성평등 실현 목적의 여성사회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(대표 김희은)이 위탁 운영한다. 센터장을 포함해 3팀 10명으로 구성된다.

□ 이번에 문을 여는 **위드유** 「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」는 예방과 관련해 ▲성희롱 예방 시스템(지침)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▲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▲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. 또, 피해발생 시 ▲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.

□ 첫째,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.

○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, 지침에는 △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△조사절차 △피해자 보호절차 △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○ 센터는 변호사, 노무사, 성폭력 상담·젠더 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‘위드유 컨설팅 전문 위원단’을 통해 △성평등 조직문화 현황진단 △성희롱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△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을 지원한다. 컨설팅은 사업장당 3회에 걸쳐 진행되며, 홈페이지(www.seoulwithu.kr)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.

□ 둘째,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

○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,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.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,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한 성(性)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,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으나, 이러한 예외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더 많은 피해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- 센터는 ‘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’을 9월부터 연중 상시 운영한다. 이를 위해 성폭력 상담·성평등 교육 전문가, 변호사, 노무사 등 ‘위드유 전문강사단’을 구성했으며, 직장 내 성희롱 전문강사단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(고용노동부 인정).
 - 교육에서는 △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점검 △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이해 △성희롱 고충사건의 분쟁해결절차 안내 △사업주 의무 및 역할 안내 등을 다루며,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메일 접수(withu@seoulwithu.kr)하면 된다.
- 셋째,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.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.
- 올해 9월 초 센터는 리드릭, 이매진출판사, 커피에반하다(가나다순)와 협약을 체결했다. 이에 따라 기업체에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, 사업주 특화 예방교육을 지원하며, 기업 생산 제품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슬로건을 삽입하는 등 콜라보레이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.
 - 또한 시민 공모전을 통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. 시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. 상세 내용은 9월 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.
- 넷째,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.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동행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 서울시가 최초다.

- 일반 성폭력 민·형사 소송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있다(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). 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 진정·고소·고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률지원제도는 전무하다.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서면(진정서, 이유서, 회사진술서 등) 제출 및 검토,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사업주 면담 시 동행,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.
- 센터는 이러한 피해지원의 공백 분야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선정, 협약을 진행했다. 선정기관은 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, 한국성폭력위기센터, (사)한국여성노동자회(가나다순)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·고용노동부 진정 등 사건을 지원한다. 올해 11월까지 각 해당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.
- 한편, 서울시는 2018년('18.9~'19.12)부터 「서울 위드유(#WithU) 프로젝트」 사업을 실시했다. 185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, 성희롱 피해자 법률 소송 및 의료지원을 하고 민·관 공동협력 ‘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’ 캠페인 및 협정체결을 실시했다.
-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“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·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”이라며, “**위드유**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거점이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※ 붙임1. 센터 CI

2. 「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」 사업 안내 포스터
3. 「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」 사업 안내 포스터
4. 「법률·동행지원」 사업 안내 포스터

붙임1 센터 CI

	
<p>▲ CI</p>	<p>▲ 현판</p>

I·SEOUL·U

서울직장
성희롱성폭력
예방센터 **위드유**

성희롱 없는 안심일터를 위한

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

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

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

조직문화 점검,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절차 도입으로
성평등한 안심일터를 만들어가요!

신청기간 2020년 8월 ~ 2020년 11월

대상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
비용 전액 무료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


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 컨설팅 위원 1인 매칭

컨설팅 위원은 변호사/노무사/성폭력 상담·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



전문 컨설팅 위원이 사업장 3회 방문하여 진행

1회 3시간, 총 소요기간 2개월

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
'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'
함께 신청 시 우선 선정

1회차

· 사업주/근로자 면담
· 사업장 내부자료 검토

2회차

· 사업주 대상
제도 개선방안 제언

3회차

· 전체 구성원 대상
컨설팅 결과 공유

✓ **조직문화 점검**

- 조직 내 성평등 의식 수준 조사
-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 진단
-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언 등

✓ **내부 규정 개선방안 제시**

- 취업규칙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 검토
-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
- 사업장 내 제도개선방안 자문

컨설팅 프로세스

컨설팅 신청

-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
- 위드유센터 메일 접수 withu@seoulwithu.kr

사업장 선정

- 접수 후 전화 안내
- '성희롱 예방교육' 함께 신청 시 우선 선정

일정 조율

- 컨설팅 일정 조율
- 사업장 현황 파악
- 전문 컨설팅 위원 매칭

컨설팅 수행

- 3회차 방문하여 진행
- 1회 3시간
- 총 소요기간 2개월

평가 및 관리

- 만족도 조사
- 6-12개월 이후 모니터링

문의 |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**조직문화혁신팀** 02)771-7770 (내선1)

I · SEŌUL · U

서울직장
성희롱성폭력
예방센터 **위드유**

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
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
법정 의무교육 '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'을 무료 지원합니다.
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마련을 위해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

- 신청기간** 2020년 9월 ~ 2020년 12월
- 대상**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- 비용** 전액 무료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
<p>사업장 특성에 맞는 전문강사 매칭 노동부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, 변호사, 노무사 등으로 구성</p>	<p>강의 시간 선택 60분 90분 120분</p>

예방 교육 프로세스

교육 신청	사업장 선정	일정 조율	교육 실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• 위드유센터 메일 접수 withu@seoulwithu.kr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류 접수 후 전화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 일정 조율 • 사업장 현황 파악 • 전문강사 매칭 ※ 매년 교육 신청시, 기본/심화/특화 과정으로 예방교육 운영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강사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

문의 |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조직문화혁신팀 02)771-7770 (내선1)

I·SEOUL·U

서울직장
성희롱성폭력
예방센터 **위드유**

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

법률·동행지원

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이 필요한
피해자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활동가가 함께
무료로 사건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동행합니다.
법률·동행지원이 필요하신 분은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

신청기간 2020년 8월 ~ 2020년 11월

대상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
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
✓ 직장 내 성희롱 관련 **새내·고용노동부 진정 등 사건지원**



법률전문가 선임 지원
(공인노동무사 또는 변호사)

- 사건 상담 및 서면 제출과 검토
-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동행 등



**상담활동가
면담 지원**

- 전문가 연결을 위한
피해자 초기 면담 지원

*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에서 초기 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.

신청방법 아래 피해지원기관에 법률·동행지원 문의

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

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연락처 0505) 515-5050
이메일 yeonocenter@naver.com

한국성폭력위기센터

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
연락처 02) 883-9284
이메일 crisis119@hanmail.net

(사)서울여성노동자회

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
연락처 02) 3141-9090
이메일 equaline@hanmail.net

문의 |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
대외협력팀 정민재 매니저 02)771-7770 (내선303) 팩스 02)771-7772